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895
----------	-------

발의연월일 : 2023. 12. 12.

발 의 자 : 박대출·한무경·金炳旭
이명수·정우택·김형동
지성호·유상범·류성걸
최연숙·김예지·이 용
김태호·김영선·김미애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하지만,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통상 ‘키즈카페’로 불리는 아동 놀이시설)는 어린이와 종사자가 장시간 접촉 가능성이 높은 시설이나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또한,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실내놀이터와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원을 추가하여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및 제27호 등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에 제26호 및 제2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6. 실내공간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

게 놀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

27.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6호의 영재교육원

제57조제3항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제56조제1항제26호 각 목의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

8. 제56조제1항제27호의 영재교육원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고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이 제한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25. (생략)

<신설>

<신설>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생략)

-----.

-----.

1. ~ 25. (현행과 같음)

26. 실내공간에서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장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유원시설업 중 기타유원시설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

27.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의 영재교육원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17. (생략)

<신 설>

④ 교육감은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

③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56조제1항제26호 각 목의
기타유원시설업 또는 어린이
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사업장

[illegible]

검 ·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 2항에 해당하는 아동 · 청소년 관련기관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7. (생 략) <u><신 설></u> ⑤ · ⑥ (생 략)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56조제1항제27호의 영 재 교</u> <u>육 원</u> ⑤ · ⑥ (현행과 같음)
---	---